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40

발의연월일: 2021. 5. 24.

발 의 자:김예지·김선교·김희국

서범수・서병수・이종배

이채익 · 정진석 · 최형두

추경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이용자가 폭넓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할 것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관련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장애인 역시 문화 콘텐츠에 대한 향유와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많아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장애인에게 문화 활동은 삶의 질, 사회적 성격의 형성, 심리적 안녕 감 및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더욱 크 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제6호의2 및 제19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콘텐츠를 접근·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에 관한 사항

제19조의 제목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을 "(특별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계획) ①・② (생 략)	제5조(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3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6의2.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
	람과 동등하게 콘텐츠를 접
	근ㆍ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에
	관한 사항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	제19조 <u>(특별지원)</u> <u>①</u> (현행 제목
<u>한 특별지원)</u> (생 략)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
	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
	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
	<u>다.</u>